

엔지니어링 서비스, 지원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관한 일반조건

본 일반조건은 기업인, 공공법률기관(public law institutions) 및 공공법률특별기금(public law special funds)(이하 "고객"이라 한다)과의 법적 거래에 적용된다.

1. 총칙

- 1.1 당사의 서비스는 전적으로 본 문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다. 고객의 일반조건은 당사가 명시적으로 그 적용가능성에 동의하지 않는 한(당사가 그 적용가능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일반조건에서 "고객"이란 본 계약에 국한된 계약 당사자 법인을 의미한다.
- 1.2 계약 체결 이전 혹은 그 시점에 구두로 이루어진 합의는 당사의 서면 확인을 득해야 유효하다. 계약 변경은 서면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양식 요건 변경 시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 1.3 당사의 견적을 수령한 지 2 주 이내에 고객이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 견적을 철회할 권리를 갖는다. 원가 추산치는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있다.
- 1.4 당사의 서비스는 작업명세서(Statement of Work), 제품 사용설명서 (www.etas.com/manuals), 제품 또는 서비스 설명에 정의된 바 합의된 용도에 대해 유효하며 기업간(B2B) 거래에 국한된다.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예,

작업명세서), 당사의 서비스는 ETAS 가 ETAS 상품을 공급하는 대상시장에 대해 유효하다.

- 1.5 엔지니어링/지원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관한 신규 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본 일반조건은 고객 대상의 모든 향후 이행에도 적용된다.

2. 서비스 범위, 서비스 제공

- 2.1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서비스 대상은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명시한 특성 및 서비스 기능(기술사양 포함)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당사는 당사의 브로슈어, 카탈로그 및 유사한 판매 자료의 설명과 사양에서 기술적 및 디자인적 변경을 수행하고 제품(또는 그 일부)을 기술적으로 유사하거나 더 나은 상태의 제품(또는 그 일부)으로 교체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 경우 고객은 당사에 손해가 되는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당사의 설명, 진술 및 광고 메시지는 제조업체가 발행한 내용을 포함하여 여하한 보증선언을 내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2.2 당사는 계약 상 합의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관련 기업 및 제 3자)를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서비스 수행을 위해 고객이 독점적 기밀정보 및 문서를 공개하거나 열람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객은 서비스 이행을 위해 해당 내용이 하도급업체에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하며, 당사는 이러한 정보가 전달되기 이전에 각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해당 하도급업체가 전달받게 될 모든 정보 및

문서에 대한 기밀유지 의무를 서약하도록 한다.
Page 2/12

3.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3.1 개별 라이선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별도로 체결)이 있는 경우 한해 고객은 본 조항에 기술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계약은 항상 라이선스계약의 개시 시점부터 시작된다. 본 조항에 기술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는 라이선스 허여된 소프트웨어의 최신 프로그램 버전에 대해서만 제공된다. 이전 프로그램 버전에 대한 모든 지원 서비스는 당사자들 간 별도로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3.2 달리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다음의 서비스들로 구성된다.

- 코드 수정, 기능 향상 및/또는 변경된 기술조건에 따른 수정 등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업데이트 및 신규 버전 제공
- 심각한 오류를 해결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패치 및 수정사항 제공
- 제한, 오류 수정 및/또는 오류 회피에 대한 정보 제공
- ETAS 의 정규 업무시간(월-금요일, 은행 공휴일은 제외) 동안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설치 및 사용("방법" 관련 질문) 및/또는 발생한 결함 관련 일상적 및 간단한 이슈에 관한 기술지원

3.3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다음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프트웨어 통합 및 그러한 통합이 타사 제품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
-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 합의된/지정된 운영환경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사용
- ETAS 가 납품하지 않은 제품에 의해 발생한 문제 및 오류

3.4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제공에 관한 합의는 시스템 가용성 및/또는 자기보정(fail-safe) 기능 안정성에 대한 ETAS 의 약속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3.5 합의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고객에게만 제공된다. 고객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6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1 년간 제공된다.

3.7 고객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코드,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 데이터 등의 추가 정보와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해당 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8 고객의 협력 의무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에도 적용되며, 특히 고객은 당사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로 달성한 결과에 대하여 계속하여 책임을 진다.

3.9 ETAS 가 제 62 조 BDSG/제 28 조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처리자(processor) 의 역할을 하는 경우, 조건(ETAS GmbH)에 의거한 개별 주문, 유지보수계약 혹은 보증에 따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 하드웨어 수리 및 교정 서비스 데이터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www.etas.com/AGB-ETASGmbH)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내용은 고객의 요청 시 제공됨)이 적용된다.

4. 하드웨어 수리 및 교정 서비스

4.1 수리 서비스는 통보된 하드웨어 결함/문제점에 대한 전문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 수리 과정에서 이러한 수리 노력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음을 인지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고객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4.2 원칙적으로, 케이블은 수리하지 않고 전체를 교체한다.

4.3 기기 유형에 따라 ETAS 측정 제품에 대한 교정은 당사의 ISO 또는 DAkkS 인증 캘리브레이션 실험실에서 수행될 수 있다. 교정 서비스 및 그 범위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ETAS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4.4 수리, 교정 및/또는 유지보수 시, 공장 세팅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해당 고객의 데이터 및 설정이 삭제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ETAS에 하드웨어를 제공하기에 앞서 고객은 반드시 모든 고유 데이터 및 세팅이 안전하게 보호 및 백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5 ETAS는 수리 시 해당 하드웨어의 최신 펌웨어 버전을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4.6 수리 서비스의 보증기간은 수리제품이 고객에 인도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다.

4.7 ETAS는 요청된 서비스를 필요한 자격을 갖춘 하도급업체 및/또는 캘리브레이션 실험실에 하도급할 권리를 보유한다.

4.8 하드웨어 수리 및 캘리브레이션 서비스 제공 시 ETAS 가 BDSG 제 62 조/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 28 조에 따라 처리자(processor)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한해, 개별 주문, 유지보수계약 혹은 보증에 따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 하드웨어 수리 및 교정 서비스 데이터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www.etas.com/AGB-ETASGmbH)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내용은 고객의 요청 시 제공됨)이 적용된다.

5. 고객의 협력의무

5.1 고객은 당사의 납품 및/또는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당사에 전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를 지닌다. 당사는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 정보 혹은 기타 서비스에 대해 그 완전성 및 정확성을 확인 혹은 검증할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단, 당사자 간의 계약상 의무로 이러한 검증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나 문서에 결함, 불완전성 및 모호함이 존재하거나 객관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사의 통지 즉시 고객은 필요한 수정 및/또는 변경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고객은 당사가 통지한 바

고객이 납품한 부품의 결함 혹은 오작동에 대해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5.2 고객의 구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 한, 필요한 워크스테이션, 작업용 자재 및 도구는 당사의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사안의 속성 상 혹은 고객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다른 약정이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고객은 안전 유지를 위한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서비스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5.3 수리, 유지보수 및/혹은 교정 서비스를 위해 고객은 해당 제품을 반드시 적절히 포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은 특히 공전방지 포장을 요하는 ETAS ETK 및 VME 카드 등의 특수 하드웨어들을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4 고객이 협조, 협력 혹은 자재 제공 의무를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정 지연 및 추가 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합의된 기한 및/혹은 마일스톤을 조정하고 해당 지연 혹은 불이행에서 기인한 손해배상금 및 추가적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고객이 추가적 고지를 받은 후에도 합리적으로 연장된 기한 내에 협조, 협력 및 자재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추가적으로 갖는다.

5.5 고객은 당사 제품을 정확하게 통합할 책임이 있으며 생산적 사용에 앞서 제품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5.6 또한, 고객은 당사 제품의 사용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반드시 검증하고, 정확한 기능성(예. 기능 안정성에 관한) 검증을 위해 이를 적절히 확보해야 한다.

6. 작업 결과물

6.1 작업 결과물이 고객 주문에 따라 산출되어 제공된 경우(예. 컨셉, 회로 다이어그램, 소프트웨어 등), 고객은 계약상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상 전제된 목적을 위해 해당 결과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비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당사가 제3자 벤더사 제품, 특히 제3자 소프트웨어와 연동하여 납품한 경우 특수한 사용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청약 혹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여 별첨에서 명시된다.

6.2 고객에게 허용된 권리의 범위와 상관없이 당사는 모든 경우에 대해 산출물 및 결과의 기초를 구성하는 컨셉 및 취합된 전문성 등을 타 고객을 위한 추후 개발 및 서비스에 사용하고 적용할 권리를 갖는다.

6.3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해결책, 패치, 업데이트 및/혹은 ETAS 제품 신규 버전을 필요로 하는 한, 이에 대한 사용권한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합의된 라이선스 모델에 준한다.

7. 기간 및 기한

7.1 특정 프로젝트에 명시된 기한 및 마일스톤은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기한은 명시적으로 서면 합의된 경우에만 Page 5/12 급수력을 갖는다. 합의된 납품일 및 마일스톤의 개시 및 준수는 특히 장비 공급, 문서, 허가, 조사, 배포 및 합의된 지불조건 준수에 대한 고객의 협력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고객이 협조의무를 적시에 또는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납품기한은 이에 따라 적절히 연장되어야 한다.

7.2 납기일 미준수가 전쟁 혹은 이와 유사한 분쟁, 테러공격, 전염병, 수출입 제한 등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 및 기타 소요사태에서 초래된 경우(공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속성의 사건 포함) 합의된 납품일자는 해당 사태의 기간만큼 연장된다. 이는 당사 혹은 당사의 공급업체 관련 노사분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비스 지연 및/혹은 중단 시 고객은 이를 즉시 통보받아야 한다.

8. 인수

8.1 당사의 서비스가 고객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 고객은 서비스 이행 시 그리고 합의된 경우에만 인수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이를 즉시 인수하여야 한다. 계약상 합의된 성능 및 인수기준 대비 사소한 결함이나 편차가 있을 경우 고객은 이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단, 당사의 결함해소 의무는 여전히 존속된다. 고객은 결함 및 불일치사항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경우 납품 후 30일 이내에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당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객의 의구심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당사는 해당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8.2 고객이 상기 8.1조를 위반하거나 적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동인수테스트에 대해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인수를 하지 않거나 인수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인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동인수테스트가 실행된 후 고객이 인수증명서(예. 인수 프로토콜)를 서면으로 즉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해당 기간 동안 고객이 인수 거절의 사유가 되는 결함을 서면으로 명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8.3 자급식 부분 서비스의 경우에도 당사는 부분 인수를 요청할 권리를 보유한다.

9. 가격 및 지불

9.1 본 계약에서 합의된 가격은 간접세, 특히 매출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 판매세,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추가 요금 및 부가세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간접세를 제외한다. 이러한 세금은 해당되는 경우 고객이 추가로 부담한다.

9.2 라이선스/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고객의 소재지 국가의 현지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공제 대상인 경우, 고객은 해당 세금을 미지급 보수에서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당국에 송금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소재하는 국가와 ETAS가 소재하는 국가 간의 현행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감면이 가능한 경우,

당사자들은 그러한 감면신청이 확립된
 Page 6/12
 규칙에 따라 처리됨을 확인한다. 고객은
 ETAS에 원천징수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증명서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9.3 계약이 체결된 후 특히 임금 비용의 변경(예: 단체 교섭 협약에 따른 변경 또는 재료가격의 변경)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계약체결일부터 인도일까지 4개월 이상의 기간 간격이 있는 경우, 당사는 가격을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당사는 요청 시 고객에게 그러한 변경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9.4 달리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송장은 발행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대금지급은 공제 없이 송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행되어야 한다.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당사는 법정이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당사의 추가적 손해배상 청구권에 일체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는 동시지급(예. 인도 시 현금 지불 혹은 은행자동이체) 혹은 선불 조건으로 납품할 권리를 지닌다.

9.5 또한, 당사는 가장 오래된 미수금과 상계할 권리를 지닌다.

9.6 고객은 자신의 반대청구가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구속력 있는 최종 판결에 의해 인정되거나, 계류 중인 소송에서 판정 단계에 있는 경우에 한해, 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반대청구로 상계할 권리가 있다.

9.7 계약 체결 후, 고객의 지불능력 미흡으로 인해 당사가 청구 관련 위험에 직면할 만한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선불 조건 혹은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해 잔여 배송을 이행하고, 이를 위해 설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 혹은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10. 품질 결함

10.1 당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특정 작업의 이행으로 구성되는 경우 품질 결함에 따른 클레임 제한기간은 해당 작업물 인수일로부터, 혹은 작업이 인수에 적합하지 않거나 인수 대상이 아니 경우는 인도 후(위험이전) 12개월로 한다. 전술한 조항은 한국 법령상 보다 긴 제한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0.2 위험 이전 시점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유로 인해 제한기간 내 품질결함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재량에 따라 결함을 수리하거나 신규 납품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오류를 재현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이 수용 혹은 채택한 최신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여야 한다.

10.3 결함을 수리함으로써 후속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사는 재량에 따라 고객 시설 혹은 자체 시설에서 해당 결함을 교정하며, 고객은 보유 중인 문서와 정보 중 결함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에 제공해야 한다.

10.4 후속조치를 통해 제한기간이 새롭게 시작되지는 않는다.

10.5 후속조치가 실패한 경우, 고객은 가능한 손해배상 청구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법적규정에 따라 계약을 취소 혹은 보상을 축소할 수 있다.

10.6 후속조치를 위해 필요한 지출, 특히 운송, 출장, 임금 및 자재비용에 대한 고객의 청구는 법률의 규율에 따른다. 단, 납품된 제품이 추후 고객 영업점 이외의 장소로 이전됨으로 인해 비용이 인상된 경우, 해당 제품의 지정된 사용에 따른 철거가 아닌 이상, 예외로 한다.

10.7 후속조치에 대한 청구는 합의된 품질을 기준으로 근소한 수준의 차질 혹은 사용가능성 상의 근소한 차질일 경우 제외하되, 다른 권리와 청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10.8 다음 사항은 품질에 관한 결함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자연적인 마모
- 부적절한 취급, 작동, 보관 또는 조립, 설치 또는 취급지침 불이행, 과도한 변형 또는 사용으로 인해 위험이전 후 발생한 제품의 특성 혹은 손상.
- 불가항력, 계약조건 상 예기치 못한 특수한 외부요인 혹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 혹은 정상적 사용방식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특성 혹은 손상.

-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재현 불가능한 오류

10.9 고객 또는 제3자가 지정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확장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당사는 인터페이스까지의 품질결함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납품된 소프트웨어와 고객이 사용하는 데이터 처리 환경, 특히 고객이 구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과의 호환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10 고객은 소프트웨어의 품질 결함으로 인한 손상의 결과를 방지하거나 제한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고객은 모든 프로그램 및 데이터가 반드시 백업되도록 해야 한다.

10.11 고객이 디자인이나 재료를 규정하는 한, 당사는 재료의 설계나 선택에 따른 작업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12 고객의 소구권은 해당 청구가 자신의 고객과 사이에 존재하는 하자 관련 법정채권(예. 사례금 또는 영업권)을 초과하는 일체의 계약에 기초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유효하다.

10.13 고객의 소구권 주장을 포함하여 품질 결함에 대한 클레임은 고객이 당사 수리부서에 의해 결함 수리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제외된다.

10.14 기타 모든 측면에서 품질 결함을 이유로 민법 제393조에서 기술된 손해 및/또는 과도한 지출에 대한 당사의 보상책임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본 제10조, 제12조

및 그 하위 조항에 기술된 사항 이외의 품질결함에 대한 고객의 청구는 제외한다.

10.15 제3자 산업재산권(제11조 참조)에서 기인하지 않은 소유권과 관련된 결함에 대해서도 본 제10조를 적용한다. 작업에 제3자의 표준제품이 포함되거나 반영되는 경우, 당사의 결함해결 의무는 일차적으로 해당 제3자 제조업체로 보증 클레임을 양도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해당 제3자 제조업체가 결함을 수리하지 못할 경우, 고객은 상기 조항에 명시된 바대로 구매가격 인하 혹은 계약 취소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11. 저작권 및 관련 보호권

11.1 당사는 제3자의 산업재산권 혹은 저작권(이하 “보호권”) 침해에서 발생한 청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되, 이는 지분 혹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고객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기업이 과거 혹은 현재 소유한 보호권인 경우에 한한다.

11.2 보호권 군에 속한 최소 1개의 보호권이 유럽 특허청(EPO) 또는 독일,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또는 미국 중 1개 국가에 의해 공표된 경우가 아니 한, 당사는 보호권 침해에서 기인한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3 고객은 보호권 침해(주장) 및 이와 관련한 보호권 침해 위험이 파악된 경우 당사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당사의 요청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사법적 절차 포함) 진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11.4 보호권을 침해한 제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재량에 따라 보호권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권을 획득하거나 제품 개조 혹은 더 이상 보호권을 침해하지 않는 동등한 대체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 조건 혹은 기간 내에 가능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당사의 시정을 촉구한 경우에 한해) 법적 해지 권한을 갖는다. 전술한 전제조건에 따라 당사 역시 해지 권한을 보유하며, 이에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보호권 침해가 아직 최종적이고 유효한 판단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당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더라도 당사는 본 제11.4조의 첫 문장에 의거하여 임의로 조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11.5 보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고객에게 있거나 제3자가 제기한 청구와 관련하여 고객이 당사의 방어를 합리적 범위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청구는 제외된다.

11.6 제품이 고객의 사양이나 지시에 따라 제조되었거나 제조된 경우, 또는 보호권 침해(주장)가 당사 제품을 타사 제품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혹은 당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제품이 사용됨으로써 발생한 경우 고객의 청구는 제외된다.

11.7 그 외의 모든 측면에서, 보호권 침해 시 당사의 손해배상 의무는 제12조에 따른다.

11.8 보호권 침해에 따른 청구권의 제한기간은 제10.1조를 준용한다.

11.9 본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
 Page 9/12
 보호권 침해에 대해 고객이 제기한 청구 외의
 청구 및 결과적 청구는 제외한다.

11.10 제품은 표준(예. 모바일 서비스 표준,
 WLAN 표준), 통합 전자제품 및/또는 하위
 공급자가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컴포넌트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제품과 관련하여 이러한 제3자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와 해당 제3자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고객 대상
 클레임에 대한 배상은 ETAS 산출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객은 이러한 제3자
 지식재산권의 소유주로부터 직접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표준"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 사양 혹은 기능을
 의미한다: (i) 표준조직(특히 ETSI 혹은
 IEEE)이 채택, (ii) 연구기관, 산업체 혹은
 기타 시장참여자가 기술적 정합성 혹은
 호환성을 기하기 위해 정의, 혹은 (iii) 특정
 기술분야에서 공통된 관행으로 제정.

11.11 고객이 제품에 포함된 표준, 통합
 전자제품 및/또는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사용함으로써 제3자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ETAS는 요청 시 그러한 주장에 관한
 정보들을 고객에게 합리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는 ETAS가 통제하고 고객에게
 제공할 권리를 지닌 일체의 문서를 포함한다.

12. 손해배상, 제조물책임

12.1 당사는 계약상 혹은 비 계약상 의무 위반의
 결과로 초래된 손해 및 과도한 지출에 대해
 보상(이하 "보상") 책임이 있다. 단, 이는
 다음의 경우에 국한된다.

- 고의적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
- 치명적이거나 신체적인 상해 또는
 건강 상의 손상
- 품질 또는 서비스 수명 보증
- 중요한 계약의무 위반
-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의무적 책임
 혹은
- 혹은 기타 의무적 책임

12.2 그러나 중요한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지급되는 보상은 계약형태에 따라
 전형적으로 예측가능한 손상에 한정된다. 단,
 고의적 행위나 중과실 또는 치명적 혹은
 신체적 상해 또는 건강상의 손상이나
 품질보증 인수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3 당사의 서비스 혹은 제품은 전자시스템에
 대한 통제 혹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생명 혹은 사지의 부상이나
 재산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의
 서비스 혹은 제품은 오로지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만이 조작하도록 되어 있다. 부적절한
 작동 또는 의도하지 않은 방식의 사용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에 대해 당사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2.4 차량 거동에 대한 안전 관련 개입을 위해

Page 10/12
 당사의 서비스 및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예. 차량의 버스시스템 촉진(예. CAN) 혹은 차량의 제어장비에 우회 개입하는 경우(예. 파워트레인, 샤프트 또는 차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차량 탑재 전자 제어장치) 및 오작동 시 생명의 위협 및 사지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전자제어기기와 당사의 서비스 및 제품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 사용자는 위험 발생 시 안전조건(예. 비상정지모드 또는 Limp-Home 작동)으로 시스템을 안전하게 전환하는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12.5 고객의 자체 소프트웨어, 모델 세그먼트, 또는 하드웨어의 사용 또는 당사가 배포한 인터페이스를 통한 당사 서비스 및 제품 액세스에서 기인한 성능, 사용성 및 안전성에 대한 영향 혹은 손상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6 당사 제품의 결함 또는 오류가 고객의 데이터 및 프로그램에 손실 또는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 당사의 책임에는 복구에서 기인한 일체의 지출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고객은 정기적으로 데이터 백업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12.7 전술한 조항은 증거 번복(reversal of evidence)으로 해석될 수 없다.

12.8 당사에 대한 책임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한, 그러한 배제 또는 제한은 당사의 직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위하여도 적용된다.

13. 철회/해지

13.1 고객이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예. 지급불이행), 당사는 합리적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계약을 철회 혹은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여타 권리는 여하한 영향 없이 존속된다.

13.2 고객이 지급을 중단하거나 파산 혹은 채무면제 목적의 유사한 절차를 신청한 경우 당사는 계약을 즉시(유예기간 없이) 철회 혹은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13.3 다음의 경우 당사는 유예기간을 제공함 없이 계약을 철회 혹은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 고객의 재무상황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 당사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할 고객의 능력이 위험에 처한 경우, 또는
- 고객이 파산한 경우

13.4 계약서 서명 후 법적 및/또는 규제 변경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계약을 철회 혹은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13.5 당사의 계약 철회 또는 해지 통지서를 수신하면 고객은 당사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접근권한을 당사에 즉시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당사 혹은 지정된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전통지가 있을 경우 당사는 당사의 정당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13.6 본 제13조에 언급된 권리들은 일체의 법령 상 권리에 덧붙여 적용되며,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4. 수출 통제 및 세관

Page 11/12

14.1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적용되는 외국 무역법(국내 및 국제 (재)수출 통제 및 관세 규정(금수조치 및 기타 제재 포함)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이하 "외국 무역법")에 따라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금지되거나 저해되는 경우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술적 또는 법적 이유로 일부 이행이 제외되거나 일방 당사자가 일부 이행에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본 해지는 전체 계약을 종료한다.

14.2 대외무역법에 따른 인·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요건(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의무 이행 시기는 그에 따라 연장 또는 변경되며, 어느 당사자도 해당 지연과 관련하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인허가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인허가가 거부되거나 허여되지 않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해당 인허가가 요구되는 의무의 이행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기술적 또는 법적 이유로 일부 이행이 제외되거나 일방 당사자가 일부 이행에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본 해지로 전체 계약이 종료된다.

14.3 각 당사자는 제14.1조에 따른 이행을 금지 또는 방해하거나 제14.2조에 따른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대외무역법을 알게 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4.4 당사의 요청에 따라 고객은 대외무역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대외무역법과 관련하여 당국이 요청하는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 및 문서는 최종 고객/사용자, 목적지 및 인도물 및 서비스의 의도된 최종 사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고객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당사에게 해당 정보 또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단독 재량으로 본 계약에 따른 당사의 의무 이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4.5 고객이 제3자(구체적으로 고객의 계열사 포함)에게 인도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은 관련 대외무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당사는 고객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4.6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사는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당사의 본 계약상 의무 불이행 또는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14.7.1 관세 국경을 넘어서 당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고객은 운송물품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수입 통관을 위해 상업 송장 및 인도증서 등 필요한 모든 문서 및 정보를 당사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무상으로 당사에 납품하는 경우, 고객은 추정 송장에 "관세 목적만을 위한" 노트와 함께 공정한 시장

가격을 반영한 가격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 가치는 하드웨어와 각 소프트웨어와 같은
 재화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4.7.2 인도 또는 견적 서류에서 서면으로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기타 데이터(예: 지도 데이터)의 국경간 공급 또는 제공은 전자적 수단(예: 이메일 또는 다운로드)으로만 이루어진다. 본 조항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하드웨어에 플래시가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15. 비밀, 기밀유지

15.7 당사의 모든 비즈니스 및 기술 정보(제품의 구매가격, 납품 가능한 모든 품목 또는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될 수 있는 특성 및 기타 지식 또는 경험 포함)는 이미 공개된 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해 반드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고객 내부적으로도 사내에서 해당 사항에 반드시 관여할 필요가 있으며 기밀유지준수 의무를 갖는 이들에 국한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대상 비즈니스 및 기술정보는 여전히 당사의 독점적 재산으로 존속한다. 당사의 사전서면 동의를 득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정보는 복제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 당사의 요청 시, 당사를 출처로 한 모든 정보(일체의 사본 및 녹음본 포함) 및 대출 자산은 즉시 완전히 당사에 반환되거나 파기되어야 한다.

15.8 당사는 제11.1조(특히, 실용신안, 반도체 보호 등 산업재산권 신청권 및 저작권을

포함)에 명시된 정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16. 기타 조항

16.7 본 일반조건 규정 중 또는 본 일반조건에 근거하여 체결된 계약 규정 중 하나가 무효이거나 무효화되는 경우, 이는 나머지 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당사자들은 무효한 규정을 그 규정이 추구하는 경제적 성공에 가장 근접한 유효한 규정으로 대체할 의무가 있다.

16.8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의 재량에 따라 주문을 실행하는 사업시설의 등록주소지 소재 법원으로 한다

- 상인(merchant)이거나,
- 한국 내 일반 관할법원이 없거나,
- 고객이 계약체결 후 등록지나 주소지를 해외로 변경하거나, 소송 제기 당시 고객의 등록지 또는 주소지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또한, 당사는 고객의 등록사무소 소재지 또는 지사운영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소송을 개시할 권리도 갖는다.

16.9 당사와 고객 간 모든 법적 관계는 국제사법 규정 및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법에 의해 규율된다.

* * *